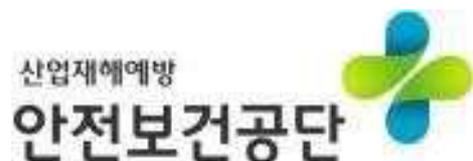


「2026년 대 ·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공고문(2차)



2026년 대 ·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건설업) 공고(2차)

2026. 1. 26.[월]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건설업) 공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상생방안을 실천하면, 정부가 기술·재정적으로 지원하는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상생협력을 실천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월 26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사업 내용

◇ 모기업(건설업 원청)이 협력업체(하청) 및 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상생협력활동에 대해 정부가 매칭하여 비용 지원*

* 협력업체와 지역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위한 안전보건 컨설팅, 교육, 캠페인, 안전보건 물품 등 자율적인 상생협력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은 비용 부담 없음)

↳ (매칭비율) 모기업 50:정부 50

- 정부지원 잔여 예산: 약 1억원
- 지원기간: 사업대상 선정일 ~ 2026. 12. 11.(금)
- 사업대상: 협력업체(하청), 지역중소기업과 함께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시공하는 모기업(종합건설사)
- 참여방법: 모기업이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 (컨소시엄 구성)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 3개소 이상 필수 참여
- 참여조건: 매칭지원 참여(모기업 최소 투자액 : 500만원 이상, 분담금 기준)
- 사업혜택: 공단 재정지원사업(용자·보조금) 우대 및 각종 금융 혜택 등(첨부3 참조)

사업 참여 신청

신청기간	• 2026. 1. 26.(월) ~ 2026. 1. 29.(목) 18:00
신청자격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시공하는 모기업(종합건설사)
신청방법	• 공단 본부(건설사업부)에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이하 세부 사항을 참고
제출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참여 사업장 현황 포함) 1부<첨부1>
사업대상 선정방법	• 고위험 업종, 최근 3년간 업무상 사고 재해 이력 협력업체 참여, 협력업체 등 참여수, 매칭지원 범위, 시공능력평가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

문의처 : 052-703-0689, 0693(안전보건공단 건설사업부)
044-202-8924, 8925(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I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모기업(건설업 원청)과 협력업체(하청), 지역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협력하여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 정부는 안전보건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확산하여 기업의 자율안전관리 문화가 조성·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사업대상 선정일 ~ '26. 12. 11.(금)
- (사업규모) 정부 지원 잔여 예산 약 1억원
- (사업대상)
 - 협력업체(하청), 지역중소기업과 함께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시공하는 모기업(종합건설사)

□ 추진절차



II 사업 내용

- ❖ 모기업은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약체」를 구성하여 모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지식, 기술과 경험을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에 전수
- ❖ 공단은 기업의 자율적인 상생협력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 ❖ 모기업과 정부·공단은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상생협력활동 소요 비용을 매칭 분담 지원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약체」 구성·운영 (필수)

- 컨소시엄별로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약체*」를 구성·운영하고 이를 모기업 우수사례 벤치마킹의 통로로 활용

《 상생협약체 구성·운영 기준 》

- (구성) 위원장은 모기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으로 하고, 위원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 대표 등 전원
- (운영)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약체 등과 별도로 구성·운영하고, 최소 분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운영

-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의 사업주, 안전보건 관계자 등이 모기업 현장 탐방 등을 통해 모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지식, 기술과 경험을 전수

《 활동내용(예시) 》

① 위험성평가 실시 사례, ② 순회점검 등 유해·위험요인 파악 방법, ③ 아차사고 발굴 및 제안제도 활용, ④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활동, ⑤ 산재예방 우수사례 공유, ⑥ 고위험 공정 안전관리 노하우, ⑦ 협력업체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등

□ 상생협력활동 현장지원(공단 → 모기업,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

- 모기업과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상생협력 실태를 파악하고, 상생협력활동 계획 수립 및 자율적인 상생협력활동이 충실히 이행 되도록 지원

* 상생협력활동 계획서는 모기업이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정부+모기업 →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

- 매칭지원 참여 방식

- 모기업은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협약체」를 구성·운영하고, 컨설팅 과제 또는 안전보건활동 과제는 아래 방식 중 하나로 참여

《 매칭 지원 참여 방식 및 참여 제외 대상 》

❖ 매칭지원 참여 방식

- ① 컨설팅 과제 지원만 참여, ② 안전보건활동 과제 지원만 참여
- ③ 컨설팅 과제, 안전보건활동 과제 모두 참여

❖ 매칭지원 제외 대상 협력업체·지역중소기업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기업(예: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 ③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기업
- ④ 국세·지방세·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기업
- ⑤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제재 대상인 기업
- ⑥ (컨설팅과제) 공단의 국고지원 위탁사업*을 지원받은 기업(당해연도)

* 소규모 사업장 기술지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근골격계질환 예방, 질식재해 예방 등

- 최소 투자액(필수조건) : 500만원 이상(모기업 분담금 기준)
- 모기업이 협력업체·지역중소기업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맞춤형 컨설팅 과제<첨부4> 및 안전보건활동 과제<첨부7> 중 세부 활동을 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기업과 정부가 매칭 분담 지원
- (지원한도)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 1개소 당 최대 **1,000만원**, 컨소시엄 당 최대 **1억원**

구 분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
매칭 분담 비율	모기업50 : 정부50

- ① **(컨설팅 과제)**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모기업이 정한 컨설팅 과제<첨부4>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기업과 정부가 매칭 분담 지원

《 정부지원액 산정(예시) 》

- 협력업체 총 10개소가 참여한 컨소시엄에서 모기업이 컨설팅<첨부4> 지원을 아래와 같이 설계하는 경우
 - (예시) 협력업체 10개소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1개소당 컨설팅 비용이 각각 1천만원씩 소요된 경우
 - 컨설팅 소요 총 비용은 1억원
 - : 정부지원액 5천만원, 모기업 분담액 5천만원

- (지원과제 한도) 협력업체·지역중소기업 당 1개* 과제만 신청 가능<첨부4 참조>

* 1번~5번 과제 중복지원 불가, 단, 5번 과제의 경우 1번~4번 과제와 신청 주제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중복지원 가능

❖ (지원가능 예시1) 과제2(위험성평가 진단·컨설팅), 과제5(기타: 밀폐공간 위험예방)
(지원불가 예시2) 과제4(안전보건진단), 과제5(기타: 근골질환 작업개선): 보건 분야 중복

- (과제 선정방법) 모기업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위험성평가 실행력 강화 및 안전보건 역량 향상 등을 위해 컨설팅 내용을 선정

《 컨설팅 과제 》

-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진단·컨설팅, ② 위험성평가 진단·컨설팅, ③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진단·컨설팅, ④ 안전보건진단, ⑤ 기타(안전보건 상생협의체 건의·요청사항) 등

※ 컨설팅 과제 세부 내용은 <첨부4> 참조

② **(안전보건활동 과제)**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모기업이 정한 안전보건활동 과제<첨부7>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기업과 정부가 매칭 분담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지급 대상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는 지원 제외

《 정부지원액 산정(예시) 》

■ 협력업체 총 10개소가 참여한 컨소시엄에서 모기업이 안전보건활동(첨부7) 지원을 아래와 같이 설계하는 경우

○ (예시1) 협력업체 10개소에 대해 차량계 건설기계 충돌방지장치 등 스마트 안전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1개소당 지원 비용이 각각 1,000만원씩 소요된 경우

- 총 소요 비용은 1억원
: 정부지원액 5천만원, 모기업 분담액 5천만원

- (과제 선정방법) 모기업이 아래 지원 과제 중에서 선정

《 안전보건활동 과제 》

① 안전보건 세미나(간담회, 포럼, 상생협의체 워크숍 등), ② 안전보건 캠페인, ③ 안전보건 물품, ④ 안전보건자료 제작·배포(구매품 포함), ⑤ 안전보건교육 지원(강사로 포함), ⑥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위탁비용 ⑦ 외국인근로자 활동지원, ⑧ 근로자 휴게시설, ⑨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⑩ 기타(안전보건 상생협의체 건의·요청사항)

※ 안전보건활동 과제 세부 내용은 <첨부7> 참조

□ **협력업체 안전코칭**

○ 모기업과 함께 사업 참여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의 주요 공정(일부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상생협력활동 이행 상황 등 코칭

- **(대상선정)** 공단-모기업이 중상해 재해 다발 고위험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미흡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선정

* 컨소시엄당 최소 1개소 이상

- **(주요내용)** 5대 중대재해 및 12대 핵심안전수칙, 위험성평가 등을 중점 지원

▶ **(5대 중대재해)** ① 추락, ② 끼임, ③ 부딪힘, ④ 화재·폭발, ⑤ 질식

▶ **(12대 핵심안전수칙)** ① 안전모·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② 작업발판, 안전난간, 추락방망 설치, ③ 개구부 덮개 고정 설치, ④ 방호덮개, 안전가드 등 방호장치 설치, ⑤ 정비보수 작업시 전원차단 등 잠금조치 및 안전표지 부착, ⑥ 작업관계자 외 출입금지 및 작업지휘자 배치, ⑦ 근로자 안전통로 확보 및 작업장 정리 정돈, ⑧ 용접시 불티 비산방지 철저 및 화재감시자 배치, ⑨ 소화설비 및 가연물 관리 철저, ⑩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작업 중 충분한 환기 유지, ⑪ 송기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⑫ 폭염 5대 기본수칙(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119신고)

* 중대재해 발생 주요 업종, 원인, 유형, 기인물 등에 따라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모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 평가 · 우수사례 발굴

- 사업 참여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위한 투자 확대, 원·하청 공동 위험성평가 등 실적 및 우수사례 제출

* 수행 완료보고서, 안전코칭 실적, 컨설팅 기관 모니터링 결과, 우수사례 발굴확산, 협력업체 등 사고사망중상해 재해 감축 성과 등을 토대로 평가(제출 시가서식, 평가 방법 등은 추후 안내 예정)

□ 매칭 컨설팅 기관 모니터링 · 평가

- 컨설팅 품질 제고를 위한 업무수행 절차 준수, 보고서 적정 여부 등 점검·확인
 - (모니터링) 매칭 컨설팅 지원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컨설팅 업무수행 절차 및 보고서 적정성 등 점검(연중 상시)
 - (현장평가) 매칭지원 참여 컨설팅 기관을 대상으로 보고서 품질제고 및 활동 내용을 평가(9~11월 예정)
 - (평가결과 공개) 매칭지원 참여 컨설팅 기관 평가 결과(S~D등급)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12월 예정)

III

매칭 컨설팅 지원

□ 컨설팅 수행 절차

- (컨설팅 협약) 3자간 협약[공단-모기업-컨설팅 기관] 체결

* 협약 시 필요 서류는 <첨부8> 참조, 공단 부담금의 경우 최대 70%까지 선금 지급 가능

- (컨설팅)

- (실태 컨설팅) 모기업이 컨설팅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의 유해·위험요인 발굴, 문제점 및 개선대책 제시

* 컨설팅 기관은 수행일지, 단계별 산출물 및 증빙 자료를 작성하여 모기업의 확인을 받아 보관(과제별 컨설팅 보고서, 교안, 회의록 등<보고서 서식 등은 별도 제공 예정>)

- (확인 컨설팅) 실태 컨설팅에서 제시된 개선대책에 대한 이행완료 상태 점검 및 추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컨설팅

* 실태 컨설팅 및 추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재해예방 정보 제공 포함

- (교육연계) 컨설팅 수행 시 병행(실태 컨설팅 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 교육)
- (보고서 작성) 공단 제공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첨부4> 참조)
- (지원계획 변경) 컨설팅 기관은 승인된 지원계획의 변경 사항* 발생 시 모기업의 확인을 거쳐 공단(본부)에 변경 요청
 - * 협약기간 연장, 컨설팅 지원 분야, 컨설턴트 투입계획 변경 등
- 공단(본부)은 필요시 소요비용(협약금액) 등을 재산정하고 그 결과를 모기업 및 컨설팅 기관에 통보
- (수행완료 보고서 제출) 컨설팅 기관은 컨설팅 완료 후 모기업의 확인을 거쳐 공단(본부)에 수행완료 보고서 및 수행일지(산출물 전체 포함) 제출*
 - * 확인 컨설팅 완료 후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협약기간 내)

□ **컨설팅 수행 기준 · 자격**

- (수행기준) ※ (첨부4) 컨설팅 매칭지원 과제 참고

①	[과제 1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진단·컨설팅
	[과제 2번] 위험성평가 진단·컨설팅
	[과제 5번] 기타(안전보건 상생협의체 건의·요청사항)

- 컨설팅(실태+확인) 최대 일수는 아래 기준에 따라 수행하며, 확인 컨설팅 일수는 실태 컨설팅 일수의 50%* 범위 내 수행(2인 1조)

* (예시) 확인 컨설팅이 2.5일로 산정되는 경우 2일 수행

협력업체 현장 수	컨설팅 일수
5개소 이상	최대 8일
3~4개소	최대 6일
3개소 미만	최대 4일

※ (현장 수 산정기준) 실태 컨설팅 수행일 기준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 수로 판단

<컨설팅 보고서에 관련자료 반드시 첨부>

※ 컨설턴트 2인 1조 예외: 기술사 또는 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 1명이 컨설팅 가능

- 컨설팅 1회(1일) 기준 투입시간은 협력업체 1개소당 5시간 이상

②	[과제 3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진단·컨설팅
	[과제 4번] 안전보건진단

- 과제별 수행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라 모기업이 컨설팅 기관과 협의하여 추진[지원한도 : 정부지원금 기준 협력업체당 최대 600만원]

※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KOSHA-MS 실태 심사 또는 ISO45001 인증심사를 10월말까지 완료하는 조건으로, 미 완료시 정부 지원금 지원 불가

- 컨설팅 1회(1일) 기준 투입시간은 협력업체 1개소당 5시간 이상

○ **(컨설턴트)** 『컨설턴트 등급 기준표<첨부6>』의 기준 적용

- 컨설턴트 2인 중 “고급기술자” 등급 이상 1인이 반드시 참여

※ 컨설팅 수행 세부 기준은 <첨부5> 참조

□ 주요 과업 내용

○ **(컨설팅)** 컨설팅 과제 지원 분야별 세부내용<첨부4>에 따라 참여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의 유해·위험요인 발굴·개선 등 지도

* 세부 내용에 대한 매뉴얼은 지원 대상 선정 이후 별도 제공 예정

- “매칭지원 계획서”에 따라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등 문제점 및 개선 대책*을 제시

* 컨설팅 과제 지원 분야별 경영층(CEO 등) 및 현장 노동자에 대한 면담(강평 포함)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컨설팅 보고서에 기입<필수>

* **(교육연계)** 컨설팅 추진 시 병행 실시(실태 컨설팅 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 개선 사항 교육)

- 매칭 컨설팅 과제 중 선택한 지원 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컨설팅 수행으로 협력업체 등의 산재예방에 기여

○ **(재정지원 연계)** 위험요인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다른 안전보건 재정사업과 연계

*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떨어짐) 등 건설 재정지원사업과 연계 가능함을 안내(안내 리플렛 등 제공)

○ **(자료보급 등 지원)**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고사망·중상해 예방 자료 제작·보급(동종·유사업종 재해사례, 아차사고 사례), 안전관리 우수사례

□ 컨설팅 수행기관 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건설안전분야)
-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분야) 법인
- 그 밖에 컨설팅 업무 수행에 적절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기관
* 컨설턴트의 기술자격 등급이 건설안전분야 특급기술자 이상(특급기술자, 기술사, 지도사 등)

❖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은 당해연도 참여 배제

- ① 공단 '25년 '민간위탁사업평가에서 부적합등급(N등급) 기관 등 '26년 사업 참여 제한 기관
- ② 공단 '25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수행기관 평가 부적합 등급(N등급) 기관 등(계약해제·해지기관 포함) '26년 사업 참여 제한 기관
- ③ 고용노동부 지정기관 중 신청일 현재 영업(업무)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기관

❖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컨설턴트 참여 제한

공단의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담당 기관장/부서장/담당자의 경우, 퇴직 후 2년 이내에는 퇴직 전 관할지역 내 모기업에 대한 컨설팅 제한

□ 사업제한 조건

- 공단은 아래와 같은 경우, 컨설팅 기관에 대하여 협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비 정산은 “협약서 일반조건”에 따름
 - 모기업 및 컨설팅 기관이 컨설팅 사업 수행 중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사실 내용 확인 후 즉시 해지)
※ 상기 사유(1일(1개소) 5시간 실시 등 컨설팅 수행기준 위반포함)에 따라, 동 사업에 참여한 컨설팅 기관은 사업 참여를 취소할 수 있음(사업비 정산 대상 제외)
 - 기타 “협약서 일반조건”에 따라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 공단의 매칭 컨설팅 참여 협력업체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해당 컨설팅 기관에 1차 경고 등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음
 - 1차 경고* 이후 시정되지 않은 경우 심의위원회(공단본부)를 통해 협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음
* 현장 모니터링 실시 결과 사업 수행 부진, 수행 절차 이행 미흡 등에 따른 주의 필요시

- 명백하게 부당한 이유로 계약 해지된 컨설팅 기관은 향후 공단이 주관하는 사업 참여 제한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음

□ 사업비 신청 및 정산(지원금 지급)

- (선금 신청) 공단 분담금의 최대 70%까지 선금 지급 가능
- (사업비 정산) 모기업이 해당 매칭지원 활동 완료 후 관련 증빙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 최종 확정 후 사업비 정산
 - ※ 컨설팅 중 휴·폐업, 소멸 협력업체에 대한 비용은 컨설팅 실적 기준 정산
 - ※ 공단의 국고지원 위탁사업과 중복 지원될 경우 지원금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IV 사업 대상 선정 등

□ 선정 기준

선정기준	세부기준	배점
① 고위험 업종 참여 협력업체 등	○ 고위험업종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전문건설업) 참여	최대 20점
② 모기업 협력업체 등 지원 규모	○ 모기업의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 지원 금액 규모	최대 30점
③ 협력업체 등 참여 규모	○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 참여 규모	최대 30점
④ 최근 3년간(23~25) 사고사망 재해 발생 협력업체 등 참여	○ 최근 3년간(23~25) 사고사망 재해가 발생한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 참여	최대 20점
⑤ 가점	○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 초과 업체 참여	20점

※ 선정 기준 세부 내용은 <첨부2> 참조

□ 선정방법

- 공단(본부)에서 사업 대상 선정 기준에 따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참여 모기업(컨소시엄) 최종 선정
- (선정통보) 사업대상 선정 결과와 매칭지원신청서 및 지원계획서 포함 작성·제출 안내(공단 본부 → 선정 모기업)
 - * 상생협력활동 계획서는 매칭지원 결정 후 제출일 별도 안내 예정

선정결과 발표: 2026. 2. 9.(월)

- 선정심사 후 접수·선정심사 결과를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 공지 및 선정 모기업에 개별 통보

* 공단 사정에 따라 선정 결과 발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기타 사항

-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서 및 매칭지원 신청서 등 사업 수행 양식은 사업대상 선정 결과 발표 이후 모기업에 개별 안내 예정
- 과도한 사업비 집행(부정 집행 포함 등)에 따른 외부 사정기관 점검 시 사실관계 확인 후 공단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V

사업 참여 및 매칭지원 신청

사업 참여 신청

참여방식

- 모기업이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참여신청 : 모기업이 신청

- 사업 참여 신청서<첨부1>에 참여 사업장 현황을 첨부하여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신청기간 : 2026. 1. 26.(월) ~ 2026. 1. 29.(목)

접수 및 문의처

- 안전보건공단 본부(건설사업부)

* (전화) 052-7030-693 (E-mail) r25r11@kosha.or.kr

매칭지원 신청

신청방법 :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후 모기업이 신청

- 사업대상 선정 후 매칭지원 과제에 대한 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상생협력활동 계획서는 매칭지원 결정 후 제출일 별도 안내 예정)

* 사업 참여 신청 시 제출한 컨설팅 과제에 추가하여 컨설팅 과제 변경 가능

신청기간 : 사업대상 선정일 이후(수시)

- <첨부> 1.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2. 사업 대상 선정 기준 1부.
3. 사업 인센티브 1부.
4. 컨설팅 매칭지원 과제 및 세부내용 1부.
5. 매칭지원 컨설팅 지원 기준 1부.
6. 매칭지원 컨설턴트 등급 및 지원 단가 기준표 1부.
7. 안전보건활동 과제 세부내용 1부.
8. 사업 분야별 추진절차 및 제출서류 1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기업의 선정 및 사업평가, 컨설팅 수행 업무, 성과관리 업무 등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모기업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소재지, 협력업체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소재지, 모기업 담당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직장, 휴대폰), 이메일 주소
선택항목	소속, 직책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1년)

4. 상기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는 신청 등 절차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집·이용된 개인정보는 위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며, 정보주체가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 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제3자 제공(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의거, 수집목적 내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공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제공목적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제공항목 : 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 이용기간 : 1년
-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장 명:

모기업 대표 성명: (인/서명)

상생협력 담당자 성명: (인/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2> 사업 대상 선정 기준

'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대상 선정 기준

선 정 항 목	배점	비 고						
총 합	100점							
1. 공통적용 항목	100점							
① 중대재해 취약 협력업체 등 참여 - 1개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당 고위험 업종 참여 여부 배점의 총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참여 개소</td> <td>기타 업종</td> <td>고위험 업종*</td> </tr> <tr> <td>배점</td> <td>1개 업체당 1점</td> <td>1개 업체당 2점</td> </tr> </table>	참여 개소	기타 업종	고위험 업종*	배점	1개 업체당 1점	1개 업체당 2점	최대 20점	
참여 개소	기타 업종	고위험 업종*						
배점	1개 업체당 1점	1개 업체당 2점						
* 고위험업종: 1.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 철강구조물공사업, 3.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4. 기계설비·가스공사업, 5. 상·하수도설비공사업, 6. 전기공사업, 7. 구조물 해체·비계공사업 ② 모기업의 협력업체 등 지원 금액 규모 - 1개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당 지원 금액에 따른 배점의 총합 (예시) 10개 협력업체 지원, 10개 모두 800만원 이상 지원 시 $10 \times 3\text{점} = 30\text{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지원 금액</td> <td>800만원 미만</td> <td>800만원 이상</td> </tr> <tr> <td>배점</td> <td>1개 업체당 2점</td> <td>1개 업체당 3점</td> </tr> </table>	지원 금액	800만원 미만	800만원 이상	배점	1개 업체당 2점	1개 업체당 3점	최대 30점	
지원 금액	800만원 미만	800만원 이상						
배점	1개 업체당 2점	1개 업체당 3점						
③ 협력업체 등 상생협력활동 참여 규모 -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 1개소 참여시 3점	최대 30점							
④ 최근 3년간('23년~'25년) 사고사망 재해가 발생한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이 1개소 이상 참여한 경우 - 사고사망 재해 발생 1개 업체당 10점 - 사고사망 재해 발생 업체가 없는 경우 5점	최대 20점	•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 최근 3년간('23년~'25년) 사고사망 재해 발생 기준은 고용노동부 재해조사 통계 기준						
2. 가점	20점							
①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 초과 업체가 참여한 경우	20점							

※ 개별선정 점수가 동일할 경우 항목별 순번(①→④→③→②)의 고득점 사업장 순으로 우선선정
 ※ 상기 기준에 따라 선정되었으나, 기준에 미달하여 동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참여 취소
 ※ 선정 심의 시 특정기업 편중, 사업취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 결정으로 대상 사업장 조정 가능

<첨부 3> 사업 인센티브

'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인센티브

구분	혜택	관련근거	적용 시기/기간	적용 대상	
				모기업	협력체
참여 기업	❖ 정부포상(산재예방 유공) 우대	고용노동부공단지침	참여 다음연도	○	○
	❖ 기술보증기금 보증 등 여신 혜택 부여	- 공단-기술보증기금 업무협약 (2019.5.14.)	참여 당해연도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평가 시 기술성 평가 점수 우대 및 지원한도 상향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업무 기준에 따름	- 공단-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업무협약 (2019.9.12.)		○	○
	❖ 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보증 혜택 (중소·중견 기업)	- 공단-무역보험공사 업무협약 (2021.11.19.)		○	○
	❖ 업무담당자 표창(우선 선정)	고용노동부공단지침	-	○	○

<첨부 4> 컨설팅 과제 매칭지원 세부내용

컨설팅 매칭지원 과제(필수항목)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진단·컨설팅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체크리스트 세부사항 준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 7요소

- * ① 위험요인 파악 ②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③ 경영자리더십 ④ 근로자 참여 ⑤ 비상조치
- ⑥ 도급관리 ⑦ 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 재해발생 및 위험공정 일부(모기업 선정) 위험성평가 실시 및 결과 제공<필수>

2. 위험성평가 진단·컨설팅(「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76호)

- ①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및 유해·위험요인 파악, ②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방법 등
- ③ 위험성평가 적정성에 대한 현장 확인, ④ 위험성평가 연계 TBM 활용법 등

❖ [필수 포함] 원·하청 공동 위험성평가(모기업 담당자 필수 참여)

- (위험성평가 필수 참여 5단계) ① 사전 준비회의,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③ 위험성 결정, ④ 감소대책 수립, ⑤ 위험성평가 실시결과 공유·검토

※ 전 공정(사고발생 공정포함)의 30% 이상(모기업 선정) 위험성평가 실시 및 결과 제공<필수>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진단·컨설팅(매뉴얼/절차서/지침서 등 제공 조건)

- (KOSHA-MS) ① 경영자리더십 ② 근로자 참여, ③ 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④ 비상조치계획 수립, ⑤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⑥ 평가 및 개선 등 인증 기준 요구사항 반드시 포함
- (ISO45001) ① 조직상황 및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파악, ② 리더십 및 근로자 참여 확보, ③ 위험 및 기획관리 계획 수립, ④ 운영 관리 및 지원 시스템 구축, ⑤ 성과평가 및 지속개선 등 인증 기준 요구사항 반드시 포함

※ ▲(지원조건)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KOSHA-MS 실태심사 또는 ISO45001 인증심사를 10월말까지 완료

※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기준 협력업체당 최대 600만원

4. 안전보건진단 ※ 공단 진단업무 가이드라인 참고

- ① 주제 : 사업장 전반의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제시
- ② 지원분야 : 안전진단, 보건진단
- ③ 대상 : 사업 참여 협력업체
- ④ 중복지원 제외 : ① 안전 분야 또는 체계구축 컨설팅 과제 참여 시 → 안전진단 참여 불가
② 보건 분야 컨설팅 과제 참여 시 → 보건진단 참여 불가
- ⑤ 진단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건설분야) *공단 제외
- ⑥ 매칭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 : 안전보건진단 추진계획(내용, 일정, 참여 진단기관 등 자율양식)

※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기준 협력업체당 최대 600만원

5. 기타(안전보건 상생협의체 건의·요청사항)

- 협의체를 통한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율 주제 지원(협력업체 요구 시)

※ (중빙제출) 협력업체 요구사항이 기록된 회의록 등 제출 시 승인(심사위원회)

※ (과제 1,2,5번) 공단 제공 양식 준용, 과제별 보고서 작성 시 개선할 점, 잘된 점, 우수활동 사례 등 반드시 포함, (과제 3,4번) 기관 자율양식 활용

※ 과제 3,4번은 MD 및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등을 참고하여 매칭지원 계획서(견적서) 제출

※ (중복지원 배제) 과제 1번~5번 중복지원 불가, <단 5번 과제는 1~4번 과제와 다른 경우에 한하여 중복지원 가능>

<첨부 5> 매칭지원 컨설팅 실시 기준

매칭지원 컨설팅 지원 기준

※ 모기업과 컨설팅 기관이 협의하여 협력업체·지역중소기업 업종과 수준을 고려, 지원 분야 및 컨설턴트 투입 규모, 수행기간 등 자율 설계

(1단계) 컨설팅 과제 선정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위험성평가 실행력 강화 등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위한 과제 선정



(2단계) 컨설팅 절차별 컨설턴트 투입계획 수립 (총 소요비용 산정)

① 실태 컨설팅	컨설턴트 투입	○ 등급 ^① × 인원(2인1조) × 일수 ^② (최대5일) ※ 다만, 컨설턴트가 "기술사 또는 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 1명 투입 가능
② 확인 컨설팅	컨설턴트 투입	○ 등급 × 인원(2인1조) × 일수(최대3일) ※ 다만, 컨설턴트가 "기술사 또는 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 1명 투입 가능

※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당 총 컨설팅 소요비용은 컨설팅 과제별 컨설턴트 투입일수 등을 확인·산정

- 컨설팅 소요비용 = 인원 × 투입일수* × 투입 컨설턴트 등급별 단가

* 최소 일수는 아래 최대 일수(수행기준)를 참고하여 모기업과 컨설팅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

※ 투입계획 수립 기준

- ① 컨설팅 1회당 『컨설턴트 등급 기준표』의 "고급기술자" 등급 이상 1인 필수 참여
- ② 컨설팅 1회(1일) 컨설턴트 투입시간: 5시간 기준(1개소)

※ 전체 컨설팅 수행 기간은 1월 ~ 10월까지 약 10개월 한도 내 설정(10월말까지 수행완료 보고서 제출)

※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시 공단 재정지원사업과 적극 연계

※ (교육연계) 컨설팅 추진 시 병행 실시(실태 컨설팅 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 교육)

❖ (컨설팅 수행기준)

① <과제 1,2,5번의 경우>

※ 컨설팅(실태+확인)의 최대 일수는 아래 기준에 따라 수행하며, 확인 컨설팅 일수는 실태 컨설팅 일수의 50%* 범위 내 수행(2인 1조) *(예시) 확인 컨설팅이 2.5일로 산정되는 경우 2일 수행

협력업체 현장 수	컨설팅 일수
5개소 이상	최대 8일
3~4개소	최대 6일
3개소 미만	최대 4일

* (현장 수 산정기준) 실태 컨설팅 수행일 기준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 수로 판단

<컨설팅 보고서에 관련자료 반드시 첨부>

* (보고서 작성) 공단 제공 양식을 참고하여 항목별 필수내용 및 현장의 잘된 점, 개선할 점, 우수활동 사례 등은 반드시 포함

② <과제 3,4번의 경우> 과제별 수행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라 모기업과 컨설팅 기관이 협의하여 자율 선정

*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기준 협력업체당 최대 600만원

* (보고서 작성) 컨설팅 기관의 자율양식을 활용하여 주제별 내용을 충실히 작성

* (지원조건)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KOSHA-MS 실태심사 또는 ISO45001 인증심사를 10월말까지 완료

<첨부 6> 매칭지원 컨설턴트 등급 및 지원 단가 기준표

매칭지원 컨설턴트 등급 및 지원 단가 기준표('25년 기준)

- ※ 아래 기준 단가는 '26년 적용되는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 공표 시 변경 예정
- ※ 아래 구분별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또는 '학력 및 경험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됨
- ※ '건설업 협력업체'의 경우 건설분야 자격 또는 학력을 소지한 컨설턴트에 한하여 참여 가능

구분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학력 및 경험기준	지원단가(원) (부가세 포함)	
현장 점검 및 컨설팅	기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 기술사*·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자 *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안전관리 또는 환경분야, 인간공학 기술사 ** 산업안전지도사(안전분야), 산업보건지도사 	860,000	
	특급 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술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0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 기술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3년 이상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술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 기술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날로부터 9년 이상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 기술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날로부터 12년 이상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 기술분야 전문대학을 졸업한 날로부터 15년 이상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700,000
	고급 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술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7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 기술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0년 이상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술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써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 기술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날로부터 6년 이상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 기술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날로부터 9년 이상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 기술분야 전문대학을 졸업한 날로부터 12년 이상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600,000
	중급 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술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4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 기술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7년 이상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술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 기술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날로부터 6년 이상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 기술분야 전문대학을 졸업한 날로부터 9년 이상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480,000
	초급 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술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써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 기술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술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써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 기술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써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 기술분야 전문대학을 졸업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430,000

<첨부 7> 안전보건활동 과제 세부내용

안전보건활동 과제 세부내용

1. 안전보건 세미나(간담회, 포럼, 안전보건 상생협의체 워크숍 등)

- 1) 주제 : ① 매칭 컨설팅 과제(5개) 관련, ②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등
- 2) 지원대상 : 세미나에 참여한 모기업·협력업체·지역중소기업 CEO, 근로자 등 전부
(컨소시엄 참여 협력업체 등 반드시 포함)
- 3) 예산지원 범위 : ① 장소 임차료, ② 강사료(여비 포함), ③ 안전보건 홍보물(참석자 당 1개), ④ 세미나 물품(현수막, 발표용 프로젝트 일체<임차>, 다과, 필기류 등) 등
- 4) 지원비율 : 해당 항목 총 소요비용의 50% 지원<정부지원금 기준>

2. 안전보건 캠페인

- 1) 주제: ① 매칭 컨설팅 과제(5개) 관련, ② 안전문화 확산 및 인식 개선 관련 등
- 2) 지원대상 : 캠페인에 참여한 모기업·협력업체·지역중소기업 CEO, 근로자 등 전부
(컨소시엄 참여 협력업체 등 반드시 포함)
- 3) 예산지원 범위: 캠페인 필요 물품(현수막, 피켓 등) 등
- 4) 지원비율: 해당 항목 총 소요비용의 50% 지원<정부지원금 기준>

3. 안전보건 물품

[지원품목] 사고사망 감축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인정하는 품목

<지원 가능품목 예시>

- 1)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보호복, 보안경, 방음용 귀마개·뒤덮개 등 개인보호구 및 폭염 대비 예방물품(쿨키트), 방한키트, 추락방지용 안전매트 등
- 2) ①자동제세동기(AED), ②가스농도측정기, ③산소농도측정기, ④공기치환용 환기팬, ⑤검전기, ⑥접지저항측정기, ⑦절연저항측정기, ⑧클램프미터, ⑨만능회로측정기, ⑩열화상카메라, ⑪누전차단시험기, ⑫소음측정기, ⑬혈압계, ⑭조도계, ⑮위험물보관저장설비
- 3) 안전보건표지(스티커 등), 소화기, 비상용 응급구조키트(구급함) 등
- 4) 차량계 건설기계 충돌방지장치, 스마트 안전장치 등

[지원대상] 사업 참여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 근로자(모기업 근로자 제외)

[지원조건]

- 1)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지급 대상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는 지원 제외
- 2)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 소유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스마트·AI포함)
- 3) 모기업의 시설, 설비 또는 감시용 목적 등 지원 불가
- 4)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공기업 포함), 정부기관, 상호출자집단인 경우 지원 불가

[예산지원 범위]

- 지원품목 1): ①소모품(방진마스크, 보호복)의 경우 근로자 1명당 3개월 수량(60개 내외), ②쿨 키트 및 방한키트는 근로자 1명당 5개 이하), ③그 외 품목은 필요 작업조건(공정별)에 따라 근로자 1명당 1개(작업공정별 근로자 배치 현황 등 관련 자료 제출)

○ 지원품목 2): 지원기업당 1대

- 단, 고정설치형의 가스농도측정기·산소농도측정기, 공기치환용 환기팬, 위험물보관저장설비는 필요공정 수량만큼 지원하되, 지원기업 당 최대 3대 이하 – 공정개요 설명서 등 관련 자료 제출
- 근로자 개인 휴대형 가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는 필요 근로자 수만큼 지원 – 작업공정별 근로자 배치 현황 등 관련 자료 제출

○ 지원품목3) : 지원기업 당 필요 수량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4. 안전보건자료 제작·배포

- 1) 주제: ① 매칭 컨설팅 과제(5개) 관련, ②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등
- 2) 제작범위: 사업 참여 지원기업 규모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모기업 지원 제외)
- 3) 지원대상: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
- 4) 지원제외: 협력업체가 공공기관, 정부기관, 상호출자집단인 경우 등
- 5) 예산지원범위: 자료 제작·배포 비용 등(구매품 지원 가능)

5. 안전보건교육 지원

- 1) 주제: ① 매칭 컨설팅 과제(5개) 관련, ② 산업안전보건분야 관련 등(내부 집합교육 포함)
* (지원 제외) 사업주 의무교육[산안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2) 지원범위: 사업 참여 지원기업 대표 및 근로자(모기업 제외)
- 3) 지원대상: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
- 4) 지원제외: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이 공공기관, 정부기관, 상호출자집단인 경우 등
- 5) 예산지원범위: ① 교육비, ② 교육출장 여비, ③ 내부 집합교육 시 강사료(여비포함) 등
* 단, 외부 강사료 지원의 경우 모기업 소속 직원은 지원 불가

6.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위탁비용

- 1) 업무범위 : 전문기관* 관리규정 제4조[위탁업무]①항~⑤항(고용노동부예규 제231호 준용, 시행 2025.1.1.)
* 계약일 기준 고용노동부에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관
- 2) 지원대상 :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협력업체·지역중소기업에 한함
* (제조업 등)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 3) 지원제외 :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이 공공기관, 정부기관, 상호출자집단인 경우 등
- 4) 예산지원범위 : 위탁계약일~10월말까지의 활동 내용 정산

7. 외국인근로자 활동지원

- 1) 주제: ① 매칭 컨설팅 과제(5개) 관련, ② 산업안전보건분야 관련 등
- 2) 지원범위 :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함(모기업 지원 제외)
- 3) 지원대상 :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
- 4) 지원제외 :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이 공공기관, 정부기관, 상호출자집단인 경우 등
- 5) 예산지원범위 : ① 안전보건자료 번역 비용, ② 통역비, ③ 외국인 근로자전용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비용 등

8. 근로자 휴게시설

- 1) 지원종류(TYPE) : 컨테이너하우스 또는 조립식[조달청 미등록제품(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구매 가능]
- 휴게시설·비품[냉·난방기, 쇼파, 테이블, 조달청 미등록제품(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구매가능]
※ 단, 조달청 미등록 제품의 경우 공단의 사전심의·정산 등을 통하여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모기업의 구매 제품이 조달청 등록(유사)제품 대비 과하게 높거나 고사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설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를 충족**하여야 함
- 2) 지원대상 :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
- 3) 지원제외 :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이 공공기관, 정부기관, 상호출자집단인 경우 등
- 4) 매칭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
- 설치계획(설치 예정 장소 명단 및 주소, 내부 구성품목 등 자율 양식)
- 지원기업의 공정별 근로자수 현황

9.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 1) 지원대상 :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별표21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보유 사업장에 한함
- 2) 측정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 3) 지원제외: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이 공공기관, 정부기관, 상호출자집단인 경우 등

10. 기타(상기 과제·물품 외, ※ 안전보건 상생협약체 건의 요청사항 포함)

- 1) 지원대상 :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
- 2) 지원제외 :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이 공공기관, 정부기관, 상호출자집단인 경우 등
- 3) 지원결정 : 매칭지원 계획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및 물품
- 4) 기타 :
 - 안전보건 상생협약체 건의·요청사항의 경우 협력업체 등 요청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 (해당 내용이 작성된 협의체 회의록 등 필수 제출)
 -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예산지원 범위 및 사업비 정산 제출 자료 등 통보(공단→신청 모기업)
 - 상기 1~9번 활동에 명시되어 있는 “예산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관련 활동 수행에 필요한 사항(항목)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 수행완료 보고서 제출 시 승인 내역에 따른 추진 결과 및 예산 관련 증빙자료(견적서, 세금계산서, 교육 이수증, 교육비 납부 영수증 등) 제출

- 단, 안전보건물품의 경우 수행완료 보고서 제출 시 해당 협력업체 등에 지급한 물품 사진 및 수령증 제출(일부 품목은 작업공정별 근로자 배치 현황, 공정개요 설명서 등 관련자료 포함 제출

<첨부 8> 사업 분야별 추진절차 및 제출서류

상생협력활동 현장지원 추진절차별 수행업무

구 분	수 행 업 무
① 사업 공고, 설명회 (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사이트 등 매체 공지 - 공단, 전문건설협회 등 유관단체 홈페이지 모집공고
▼	
② 참여신청 (모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참여신청 (접수 : 공단 본부(건설사업부)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참여신청서(참여 사업장 현황 포함) 제출
▼	
③ 사업대상선정 (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사업장 최종 확정 - 특정기업의 편중, 사업취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에서 대상 사업장 조정·심의 ○ (선정 통보) 사업대상 선정 및 매칭지원 신청 및 계획서 작성제출 안내
▼	
④ 매칭지원 신청·결정 (모기업→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업체 등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맞춤형 매칭지원* 실시 - 소요비용을 일정비율로 분담 : 50%^{정부}:50%^{모기업} * ① 컨설팅 과제, ② 안전보건활동 과제 등
▼	
⑤ 상생협력활동계획(안) 작성·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선정 모기업은 컨소시엄 참여 협력업체 등과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서(안) 수립 및 제출 -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자가 진단 후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실행계획서(안) 작성 및 제출
▼	
⑥ 현장지원(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기업에서 제출한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서(안) 사전검토 및 현장 진단을 통한 수행계획서 보완 및 개선 요구(4~6월) - 수행계획서 보완 및 확정(모기업, 6월 말까지)
▼	
⑦ 안전코칭 (공단, 모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협력업체 등에 대한 안전코칭 실시(5~10월) - 해당 기업의 작업공정(일부공정)에 대한 안전코칭 및 상생협력활동 중간 점검
▼	
⑧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실행 모니터링(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협력업체 등 위험성평가 실행 모니터링(9~10월) -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확인 대상 무작위 선정 및 위험성평가 실행 중심으로 확인
▼	
⑨ 모기업 상생협력활동 평가우수사례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실적 등 제출)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 추진실적 및 우수사례 제출 * 제출 시기, 서식, 평가 방법 등은 추후 안내 예정)
▼	
⑩ 사후관리(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업체 등의 위험성평가 이행 수준과 이에 대한 모기업의 지원 수준 유지 여부 확인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상생협력활동 매칭 컨설팅 지원 추진절차별 수행업무

구 분	수 행 업 무
① 사업 공고, 설명회 (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사이트 등 매체 공지 - 공단, 전문건설협회 등 유관단체 홈페이지 모집공고
▼	
② 컨설팅기관 풀 (Pool) 구성 (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공고 시 컨설팅기관 풀(Pool) 구성 현황을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신청 단계부터 컨설팅 기관 관련 정보를 조기 제공 ○ 기본 등록(고용노동부 지정) 기관 외 사업 참여 희망 컨설팅기관 수시 등록
▼	
③ 지원계획 수립 (모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기업이 컨설팅 기관 자율 선정 → 지원계획서 작성 - 지원분야 선정 및 컨설턴트 투입규모, 소요비용 등 자율설계
▼	
④ 참여 신청 (모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참여신청 (접수 : 공단 본부(건설사업부) 방문, 우편 또는 E-mail접수) - 참여신청서 및 지원계획서 제출(상생협력활동 계획서 제출시 함께 제출)
▼	
⑤ 지원기업 선정 (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기업 선정 및 지원계획 승인 - 지원기업, 컨설턴트 등급 적격 여부, 수행기준 준수 여부 등 확인 - 신청서(지원계획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심의·선정
▼	
⑥ 협약체결 및 착수금(선금)지급 (요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자(공단-모기업-컨설팅기관) 간 협약서 작성 ○ 공단 분담금의 최대 70% 까지 착수금(선금) 지급 가능 - 공단 → 컨설팅 기관 입금
▼	
⑦ 컨설팅 수행 (컨설팅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수확인서 제출, 지원계획에 따른 수행일지 작성 ○ 지원계획 변경 사항 보고(필요시)
▼	
⑧ 수행완료 확인 (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완료 보고서 제출 : 모기업, 컨설팅기관 → 공단 - 확인 컨설팅 실시 후 근무일기준 10일 이내(협약기간 내 제출) ○ 수행완료 보고서 확인 : 공단(심사위원회) - 지원계획과 수행내용 일치 여부, 수행 충실성, 지원성과 등 확인 ○ 확인결과에 따라 공단 및 모기업 분담금(잔금) 지급
▼	
⑨ 분담금(잔금) 지급 (공단, 모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결과 통보 : 공단 → 모기업, 컨설팅 기관 ○ 분담금(잔금) 지급 요청 : 컨설팅 기관 → 공단, 모기업 - 지급요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컨설팅 기관에 확정 분담금을 지급
▼	
⑩ 성과분석 (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효과성 분석, 우수사례 발굴 ○ 참여기업(모기업, 지원기업) 대상 만족도조사(매칭지원 관리 위탁기관)

※ 절차별 세부내용은 "매칭지원 운영 매뉴얼(추후 제공)"에 따라 수행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사업 추진절차별 제출서류

구 분	대상	제출서류
① 컨설팅기관 풀 (Pool) 구성	공단	수시등록 희망 기관 : 사업자 등록증, 컨설팅 기관 등록 신청서, 컨설턴트 등록 현황, 개인정보 동의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		
② 매칭컨설팅 지원 신청	모기업, 컨설팅 기관	1. 매칭 컨설팅 지원 참여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동의서, 컨설팅 기관 현황, 상생협력사업 참여 현황 2. 매칭 컨설팅 지원 계획서 1부
▼		
③ 지원기업 선정 (협력업체 등)	공단(심사위원회)	지원계획 심사표, 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확인서, 확인 지침 준수 각서, 청렴서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		
④ 협약체결 및 착수금(선금)지급 (요청시)	컨설팅 기관, 모기업, 공단	1. 컨설팅 기관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정보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수입인지 2만원(협약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 모기업 :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3. 공단, 모기업 착수금(선금) 입금확인서(입금확인증), 세금계산서
▼		
⑤ 컨설팅 수행	컨설팅 기관	1. 컨설팅 착수확인서 2. 수행일지, 보고서 및 증빙자료(필요시 수행 사진 등) 3. 컨설팅 지원계획 변경요청서(지원계획 변경 시)
▼		
⑥ 컨설팅 완료	컨설팅 기관	수행 완료 보고서 및 제출 공문, 완료 확인서, 수행일지, 정산자료 등
▼		
⑦ 수행완료 확인	공단	활동 완료 자료, 계산서, 정산 관련 증빙자료 (심사위원회 미실시)
▼		
⑧ 공단, 모기업 분담금 지급 신청	컨설팅 기관	정산금 지급 요청서, 입금통장 사본, 세금계산서(청구용),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